

원자력관계사업 등

[] 개시

[] 중단

[] 폐지

[] 재개

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일		처리기간 24개월	
신고인	본사	명칭				전화번호	
		대표자 성명				생년월일	
		소재지					
	사업소	명칭					
		소재지					
신고 내용	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	[] 핵연료주기시설 건설·운영 [] 핵연료물질사용 []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[]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업무대행 []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·운영 [] 판독업무					
		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					
		사업 등의 개시·중단·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					
		사업 등의 개시·중단·폐지 또는 재개 사유					

위와 같이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9조의2·제43조제1항·제51조·제62조·제69조·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·제44조·제55조·제86조·제97조·제115조에 따라 ([] 원자력관계사업 [] 판독업무)의 개시·중단·폐지·재개를 신고합니다.

년월일

신고인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없음				수수료	없음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검토	→	검토결과 통보	→	결과 확인
신고인		처리기관: 원자력안전위원회				신고인		